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3-0065822
 (43) 공개일자 2013년06월2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40/04 (2012.01) G06Q 50/26 (2012.01)
 (21) 출원번호 10-2011-0127864
 (22) 출원일자 2011년12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12월01일

(71) 출원인
(주)한국거래소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범일동, 놀원빌딩)
 (72) 발명자
박중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506-208
 (74) 대리인
리엔목특허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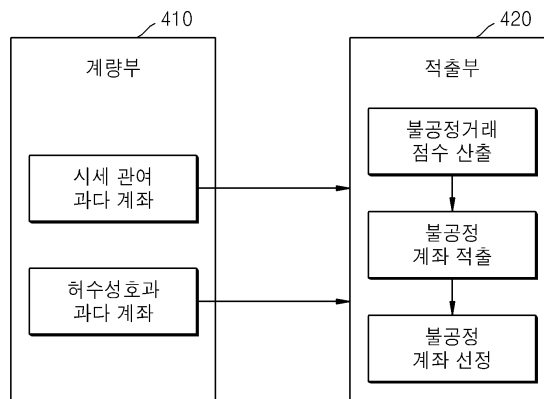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발명의 명칭 **신(新) 시장감시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해 개별 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계량부; 및 장이 종료되면 상기 계량부에서 점수화된 상기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가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하는 적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 도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해 개별 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계량부; 및

장이 종료되면 상기 계량부에서 점수화된 상기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가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하는 적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 시장감시시스템.

청구항 2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해 개별 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계량부; 및

장이 종료되면 상기 계량부에서 점수화된 상기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로 계산하고,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가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하는 적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적출부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상기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 시장감시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세관여 과다계좌는

단순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실질시세관여 과다계좌로 구분이 가능하며,

상기 단순시세관여 과다계좌는 계좌별 단순시세관여금액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고, 상기 단순시세관여금액은 시세관여금액에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며,

상기 실질시세관여 과다계좌는 시세견인강도 변수 및 시세지지강도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 시장감시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시세견인강도 변수는 시세관여금액에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고, 상기 시세관여금액은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가 상승된 경우, 매 거래시 시세를 상승시킨 정도를 나타내며, 상기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는 체결 수량이 상대우선호가의 잔량 중 몇 단계를 cover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상기 시세지지강도 변수는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가 상승된 경우 상기 시세관여금액에 미체결된 호가잔량이 cover하는 상대우선호가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 시장감시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 및 취소호가 과다계좌로 구분이 가능하며,

상기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의 비중 변수,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 비중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며,

상기 취소호가 과다계좌는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를 기초로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는 호가의 단계가 낮을수록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높게 부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 시장감시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시장감시기준 중 예방조치요구기준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히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하여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적출의 정확성을 높이는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예방조치요구기준은 회원사가 불건전 거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0003] 현행 시장감시모델은 통계적 기준과 rule기준에 기반을 두고 구축되었으며 기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가 포함된 종목이 적출되면 해당 종목을 분석한 후 주시과정을 거쳐 심리의뢰를 하거나 종결처리를 수행한다.

[0004] 그러나, 현행 시장감시모델을 구성하는 rule기준은 획일화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종목을 모두 적출하고 있어 적출건수가 과다하며, 적출건수에 비해 적중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도 1 참고).

[0005] 이러한 현행 시장감시모델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준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적출기준(rule)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적출 이후 추가적인 분석 없이도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할 수 있는 고도화된 rule 기준이 요구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인 신(新) 시장감시모델은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하여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적출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해 개별 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계량부; 및 장이 종료되면 상기 계량부에서 점수화된 상기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가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하는 적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08]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해 개별 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계량부; 및 장이 종료되면 상기 계량부에서 점수화된 상기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로 계산하고,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가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하는 적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적출부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상기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09] 바람직하게, 시세관여 과다계좌는 단순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실질시세관여 과다계좌로 구분이 가능하고, 상기 단순시세관여 과다계좌는 계좌별 단순시세관여금액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고, 상기 단순시세관여금액은 시세관여금액에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며, 상기 실질시세관여 과다계좌는 시세건인강도 변수 및 시세지지강도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0] 이 경우 상기 시세건인강도 변수는 시세관여금액에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고, 상기 시세관여금액은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가 상승된 경우, 매 거래시 시세를 상승시킨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시세지지강도 변수는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가 상승된 경우 상기 시세관여금액에 미체결된 호가잔량이 cover하는 상대우선호가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0011] 바람직하게, 상기 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 및 취소호가 과다계좌로 구분이 가능하며, 상기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의 비중 변수,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 비중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며, 상기 취소호가 과다계좌는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는 호가의 단계가 낮을수록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높게 부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2]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적출기준(rule)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적출 이후 추가적인 분석 없이도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13] 또한,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하여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적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0014] 또한, 신시장감시시스템은 시세관여, 허수성매매 등 불공정매매라는 결과 값을 나오기 위해 사전에 협의계좌가 보인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함으로써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도 1 은 현행 시장감시모델의 rule 기준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2 는 특정 계좌의 일중 시세관여를 통한 추가건인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3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모델의 rule 기준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의 내부 구성도를 도시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0017]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0018] 또한, 본 발명에 보다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업자 수준의 변경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음을 명기하는 바이다.

[0019] 도 1 은 현행 시장감시모델에서 이용하는 rule 기준의 일 예를 도시한다.

[0020] 현행 시장감시모델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 1 과 같은 rule 기준(100)을 이용하고 있다. rule 기준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여 전문가처럼 지식을 선택하여 적합한 결정을 추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0021] 현행 시장감시모델에서 사용하는 rule 기준(100)에서는 추가상승률 ○○% 이상(S110), 거래량 ○○주 이상(S120), 체결 관여율 ○○% 이상(S130) 및 시세 관여율 ○○% 이상(S140) 등 기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종목을 모두 적출한다(S150). 그 결과 불공정거래로 적출된 건수(S150)가 과다해지며, 적출되는 건수(S150)에 비해 적중률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0022] 현행 시장감시모델에서 사용하는 rule 기준(100)에서는 개별 계좌의 체결관여율(S130) 및 시세관여율(S140) 등의 매매양태를 장종료후 합산하여 그 합계 값(비율)에 따라 시장감시 대상계좌를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정도에 상관없이 일중 전체 관여율이 높은 계좌가 적출되었다.

[0023] 도 2 는 특정 계좌의 일중 시세관여를 통한 추가건인의 일 예를 도시한다.

[0024] 도 2 와 같이 특정 계좌가 일중 네번에 걸친 시세관여로(210, 211, 212, 213) 주가를 견인하는 경우, 네 번의 거래(210, 211, 212, 213)는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 1 과 같은 현행 시장감시모델에서 사용하는 rule 기준(100, 도 1 참조)은 일중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관여율 중심으로 시장감시

를 수행하고 있어, 특정 계좌의 관여율 미미로 판단되어 불공정거래로 적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0025] 즉, 현행 시장감시모델에서 사용하는 rule 기준(100, 도 1 참고)은 계좌를 분산하여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경우 계좌별 관여율이 희석되어 매 주문시점의 매매양태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감시 대상에서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002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인 신(新) 시장감시모델에서는 불공정한 매매 행위 자체를 적출하여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등으로 계량화하는 방법등을 통해 적출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 [0027] 도 3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의 rule 기준의 일 예를 도시한다.
- [0028] **신시장감시모델(300)**은 시세관여, 허수성매매 등 불공정매매라는 결과 값을 나오기 위해 사전에 혐의계좌가 보인 불공정한 매매행위 자체를 적출함으로써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 [0029] 도 4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의 내부 구성도를 도시한다.
- [0030] 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개별(연계)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또는 금액화하는 방식으로 계량화한다. 이 후, 장이 종료되면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 또는 금액(불공정거래 정도를 의미)이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한다.
- [0031] 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양태의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또는 금액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정도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그 결과, 현 시장감시시스템(도 1 참고)에서 계좌 분산 등으로 인해 계좌별 관여율이 희석되는 불공정거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0032] 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크게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에 대해 개별(연계)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 또는 금액화하는 방식으로 계량화한다.

[0033] **1.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 [0034] 시세관여는 시가, 최고가, 최저가 또는 증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 하락 또는 고정, 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 1 항 제 1호).
- [003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는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를 크게 단순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및 실질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로 구분하여 적출이 가능하다. 또한 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중 불건전매매 정도가 심하여 시장감시요원의 추가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시대상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0036] ●단순시세관여

- [0037] 단순시세관여는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호가수량에 관계없이 전체 호가건수 중 시세의 변동을 유발하는 거래가 많은 경우로 전형적인 불건전거래에 속한다.
- [0038]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시세관여의 경우 계좌별 단순시세관여금액으로 불건전매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단순시세관여는 금액은 "시세관여금액"에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시세관여금액은 제출된 호가로 인해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된 금액을 말한다. 시세관여 매매건수 비중은 계좌의 총 매매건수 중 시세의 변동을 유발한 매매건수의 비중을 말한다.
- [0039]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시세관여금액이 높게 나온 경우 일중 수회에 걸쳐 시세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종목별 특성에 따라 시세관여율은 높으나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한 경우를 적출할 수 있다.
- [0040]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단순시세관여 관련 불공정거래 금액이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금액(또는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금액(또는 점수)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

- [0041] ●실질시세관여
- [0042] 실질시세관여는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거나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켜 인위적인 가격형성으로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대량의 호가제출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불건전거래 행위이다.
- [0043]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실질시세관여의 경우 단순시세관여와 마찬가지로 금액 형식으로 산출되므로 계좌별 실질시세관여금액으로 불건전매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질시세관여금액이 높게 나온 경우 시세를 상승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매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 [0044] 또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실질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 적출기준 역시 단순시세관여 과다(연계)계좌와 동일하게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실질시세관여 관련 불공정거래 금액이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금액(또는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금액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
- [004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실질시세관여는 "시세견인강도" 및 "시세지지강도"라는 2개의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금액을 산출한다.
- [0046] 시세 견인강도는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가 상승된 경우, 매 거래시 시세를 상승시킨 정도를 나타내는 "시세관여금액"에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 [0047]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는 체결 수량이 상대우선호가의 잔량중 몇 단계의 잔량을 cover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별로 시세관여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0048] 실질시세관여를 구성하는 또 다른 변수인 시세지지강도는 제출된 호가로 인해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시세관여금액에 미체결된 호가잔량이 cover 하는 상대우선호가단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 [0049] 미체결된 호가잔량이 cover 하는 상대우선호가단계는 시세를 상승시킨 이후 호가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 있는 호가잔량이 상대(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도,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 매수)우선호가의 잔량중 몇 단계의 잔량을 cover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005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상대우선호가커버 단계별로 시세관여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0051] **2. 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
- [0052] 허수성호가 매매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 [0053] 예를 들어, 허수성 매매의 경우 대부분 대량의 주문을 낮은 가격부터 체결가능한 가격대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추격 매수세력들을 유인한 후, 일정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0054]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허수성 매매에서 불공정 매매양태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며, 각 불공정 매매양태별로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 [0055] 5가지의 불공정 매매양태의 내용 및 각 불공정 매매양태에 대해 부과하는 불공정거래 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0056] 1)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 [0057] 내용 : 허수성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제출하게 되므로 호가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 [0058] 불공정거래 점수 : 호가제출 이후 체결이 없어야 하며, 허수성매수(매도)호가의 경우는 매수(매도)호가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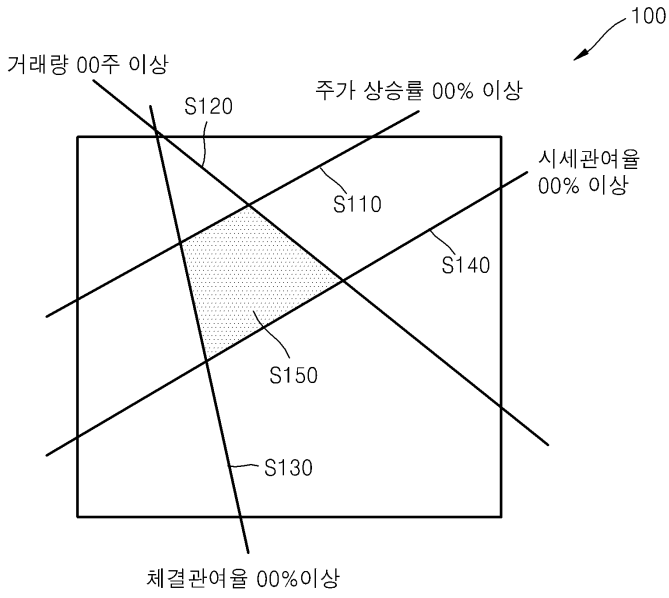
- [0059] 2)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비중
- [0060] 내용 : 제출한 정상호가수량이 제출시점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 [0061] 불공정거래 점수 : 정상호가수량이 매수(매도)호가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0062] 3)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 [0063] 내용 : 정상호가 제출후 호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호가수량이 취소시점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 [0064] 불공정거래 점수 : 호가 취소시점의 취소호가수량이 매수(매도)호가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단, 취소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0065] 4)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정정호가 비중
- [0066] 내용 : 정상호가 제출후 시세의 변동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정정하는 경우 취소, 정정호가수량이 취소,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 [0067] 불공정거래 점수 : 최초 호가 제출시 호가단계 보다 취소 및 정정호가 제출시 호가단계가 축소될 경우 취소 및 정정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0068] 5)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비중
- [0069] 내용 : 매수(매도)호가 제출후 매도(매수)호가를 재차 제출하는 경우 재차 제출한 매도(매수)호가 매도(매수)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양태 분석시 사용
- [0070] 불공정거래 점수 : 반대주문으로 제출한 호가 수량이 10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단 호가비중이 1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0071]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를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 및 취소호가 과다(연계)계좌로 구분하여 적출이 가능하다.
- [0072]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 [0073] 또한,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의 비중 변수,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 비중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 [0074] 또한, 취소호가 과다계좌는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를 합산하여 상기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 [0075] ● 단순허수성호가
- [0076] 본 발명에서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는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제출후 체결이 가까워지면 취소 및 정정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상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 [0077] 또한 매수성 단순허수성호가의 경우 매수호가 제출(전)후 매도호가 제출은 없으나 원 호가의 취소, 정정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호가 공백을 메우고 거래 유인을 위한 잘못된 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

- [0078]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단순허수성호가를 점수 형식으로 산출하여 계좌별 단순허수성호가 점수로 불건전매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게 나온 경우 체결의 의지 없이 허수성주문을 일중 수회에 걸쳐 제출함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0079] 불공정거래 점수만을 기준으로 단순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를 적출하는 것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 예방조치에 적합한 (연계)계좌를 적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0080] 따라서,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단순허수성호가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
- [0081]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를 적출하기 위한 기준의 일 예로,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의 비중" 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 [0082]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의 경우 허수성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제출하게 되므로 낮은 호가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점수를 높게 부여한다.
- [0083] 단순허수성호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 비중"은 정상호가 제출 후 시세의 변동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하는 경우로 취소 및 정정호가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의 비중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 [0084] 1단계에서 5단계에 정상호가를 제출한 경우 이후 취소 및 정정시 호가단계가 정상호가제출시 호가단계보다 축소된 경우 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취소 및 정정으로 보아 제출한 호가의 비중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 [0085] ● 실질허수성호가
- [0086] 실질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에서는 매매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호가잔량에 영향을 미친 후 추가상승(하락)시 보유물량의 고가매도 또는 저가매수하고 기존 대량호가를 취소 및 정정하는 행위인 실질허수성호가는 대부분 대량의 주문을 낮은 가격부터 체결 가능한 가격대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추격 매수 세력들을 유인한 후, 일정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
- [0087] 허수성호가행위는 독립적인 시세조종행위의 수단이기보다는 실제거래행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예방조치요구대상으로 조치하나, 연계계좌권이 실질허수성호가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불건전매매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감시요원의 판단 하에 주시대상종목으로 적출하여 필요시 심리의뢰도록 한다.
- [0088] 실질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 적출기준은 단순허수성호가 과다(연계)계좌와 동일하게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실질허수성호가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연계)계좌를 먼저 적출한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연계)계좌를 적출대상으로 한다.
- [0089] 본 발명의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에서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를 적출하기 위한 기준의 일 예로, i)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ii)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비중, iii)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iv)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 비중 및 v)반대주문 제출시 호가비중 등의 5개의 변수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산출한다. 이 중 iv)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호가 비중은 최초 호가 제출시 호가단계 보다 취소 및 정정호가 제출시 호가단계가 축소될 경우 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소 및 정정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취소 및 정정호가수량이 취소 및 정정시점 5단계 전체 호가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수를 부여한다.
- [0090] ● 취소호가
- [0091] 본 발명에서 취소호가 과다(연계)계좌는 매수(매도)의 의사 없이 매수(매도) 호가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제출 후 취소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취소호가 과다는 잔량에 영향을 주는 주문 및 취소행위의 반복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불건전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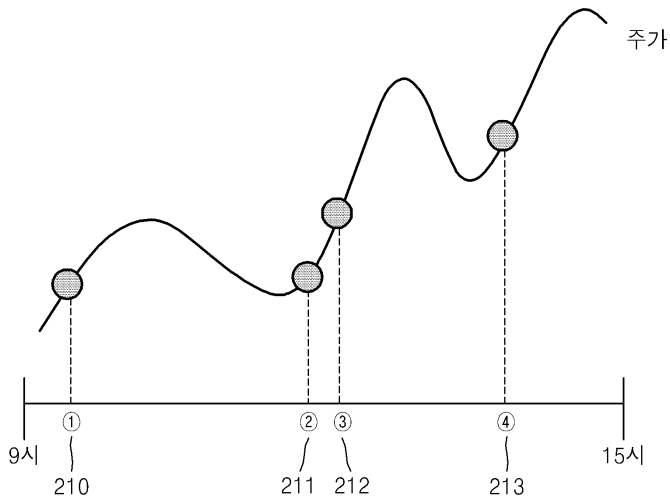
- [0092]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신(新) 시장감시시스템은 취소호가 과다(연계)계좌를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를 사용하여 적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실질허수성호가를 구성하는 변수 중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적출하는 것은 취소호가과다가 전형적인 허수성매매행위로 동 행위만으로 행위의 목적성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0093] 신(新) 시장감시시스템(400)은 계량부(410) 및 적출부(420)를 포함한다.
- [0094] 계량부(410)는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해 개별 계좌의 매 주문시점별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한다.
- [0095] 단순허수성호가 과다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기 위해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 [0096] 실질허수성호가 과다계좌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기 위해 유인하는 호가의 단계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호가의 비중 변수, 반대주문 제출시 호가 비중 변수,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라는 5가지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 [0097] 또한 취소호가 과다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하기 위해 잔량에 영향을 주는 취소호가 비중 변수 및 체결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소 및 정정 호가 비중 변수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 [0098] 적출부(420)는 장이 종료되면 계량부(410)에서 점수화 또는 계량화된 매매 양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정도를 합산하여 불공정거래 점수를 계산한다. 그 후, 불공정거래 점수가 높은 계좌를 시장감시 대상계좌로 적출한다.
- [0099] 이 경우, 적출부(420)에서는 과거 30거래일 동안 종목별로 상기 시세관여 과다계좌 및 허수성호가 과다계좌 관련 불공정거래 점수가 큰 2개의 계좌를 먼저 적출할 수 있다.
- [0100] 이 후, 적출된 계좌들의 불공정거래 점수의 98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점수 이상을 보인 계좌를 적출대상으로 선정한다.
- [0101]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 [0102]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래피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 [0103]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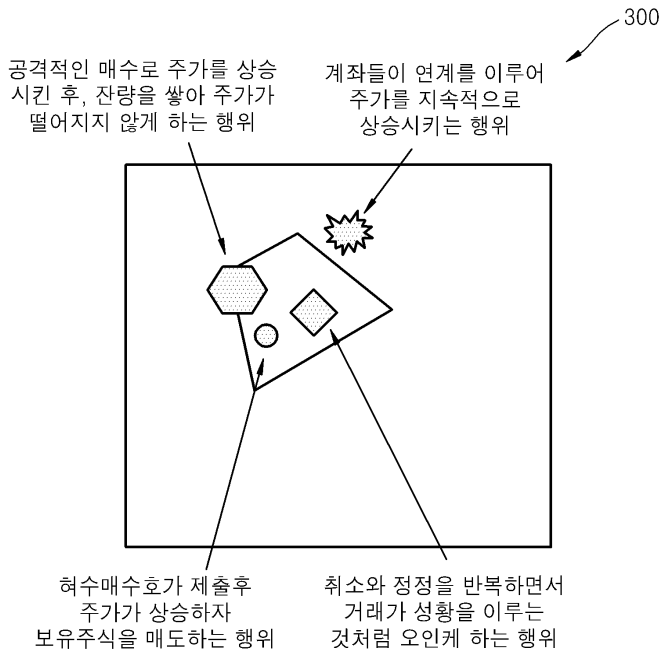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